

경영  
상식 (세무, 노무, 환경)

## 잘못된 산재상식 체크하기



###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 뛰어가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경우, 비록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록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을 갖는다면 어떠한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이 안된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직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해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주확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해서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산재법상 회사는 제3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간혹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기 위해서 피해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된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가입종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

###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역산하여 3년간의 요양급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회사가 없다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산재요양 중에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가 폐업 후 상병이 재발되는 경우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등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실적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변동시킬 수 있다. 즉, 광업, 제조업 등의 경우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는 경우 다음 해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서비스업 등 주로 사무직을 사용하는 업종, 상시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아무리 산재가 많이 발생해도 그로 인하여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을 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산재법에 의한 장애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잘못 합의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 생명보험 등 일반 사보험을 받고 나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의 경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으로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에 의한 유족연금 등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산재보험과 전혀 조정이 되지 않는다.